외상매출채권 양도통지위임장

(e-안심팩토링대출용)

아래 채권양도인(이하 "판매기업"이라 합니다)은 _____년___월___일 채권양수인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에 대한 매출채권(팩토링)거래를 위하여 _____ (이하 "구매기업"이라 합니다)에 대하여 가지는 또는 가지게 될 다음 채권을 전액 양도하였는바,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"은행"에게 위임함으로써 "은행"이 "판매기업"을 대리하여 적법하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합니다.

다 음

1. 양도채권의 표시

"판매기업"과 "구매기업"이 체결한 아래의 기본계약에 따라 "판매기업"이 "구매기업"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일체의 채권

- 기본계약

물품 또는 용역등과 관련하여 "판매기업"과 "구매기업"이 _____년___월___일 체결한 _____계약과 현재 및 장래에 체결한(또는 체결하는) 일체의 계약 등 또는 "구매기업"과 "은행"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"판매기업"이 "구매기업"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매출채권의 원인행위 등

20 년 월 일

채권양도인 겸 채무자 (판매기업)

_____(인)

주 소 :

채권양수인(은행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_____(인)

주 소 :

5-06-0580(1 - 1) (2016.06.07개정)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-약관-265호
(보존년한:완제일로부터5년)